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. 2. 17 선고 2021가단2096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이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. 27.

판 결 선 고 2022. 2. 1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6. 12. 12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0,00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50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2011. 4. 11. C와 사이에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707호로 “원고는 2011. 4. 4. 50,000,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, 변제기한은 2013. 4. 3., 이자는 연 20%로 정하여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는 연 3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”는 내용과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

나. 피고의 모친인 E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. 12. 12. 사망하였다.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, F, G, C이 있었는데,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2016. 12. 12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(이하 2016. 12. 12.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한편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,000,000원,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18. 5. 30. 말소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,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. 5. 21.에 그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‘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’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2016. 12. 12.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인데 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다.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가.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C에 대하여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1. 4. 4.부터 2013. 4. 3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%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,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

가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).

나)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공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

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렇다면 C이 피고 등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(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다18218 판결,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)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

가)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 위기에 처하자 F, C은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 상속을 포기 했고, G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지킴으로써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봉제사를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, 피고에게 C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

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,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나.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- 1)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2)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. 11. 14.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5,004,000원이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시가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. 또한 이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45,000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인 205,004,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45,000,000원을 공제한 160,004,000원(= 205,004,000원 - 45,000,000원)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0,001,000원(= 160,004,000원 × 1/4)이 공동담보가액이 된다.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피보전채권액이 위 40,001,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.
- 3)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 부분은 손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,001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혜주

부동산목록

1. 충청남도 공주시 전 612㎡

2. 충청남도 공주시 대 540㎡

3. 충청남도 공주시
(도로명주소) 충청남도 공주시
위 지상
석회흙혼합조 시멘트기와자붕 단층주택 55㎡
목조 스텔치지붕 단층주택 40㎡

